

정 관

공포일 : 2022년 09월 04일
개정일 : 2025년 02월 0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소망교회 정 관

전 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여, 각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음 세대의 성장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소속 및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소속 분당소망교회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37'에 둔다.

제3조 (목적 및 비전)

- ① 목적: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의 신앙 원리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활동 함에 있어서,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비전: 겸손과 평화가 가득한 거룩한 교회를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제4조 (적용) 본 정관의 적용범위는 본 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 및 단체와 본 교회 이름하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5조 (조직)

- ① 본 교회는 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 ②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 2 장 교인

제6조(자격)

- ① 교회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교인 자격을 취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 ② 행정위원회는 매년 장기결석 교인명부를 작성 관리 한다. 장기결석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7조(책임과 의무)

교인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성실한 예배 참여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헌금과

봉사를 통해 성도의 책임을 갖는다. 또한, 교인은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인 영적 가족이다. 그 안에서 교인들은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

제8조(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인은 교회의 주인이며 모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조직

제9조(편성)

- ① 본 교회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분과 직책 및 위원회, 부를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목회와 교회운영 및 행정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담임목사의 지위와 권한)

- ①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대표자이며 목회 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 ② 목회 활동이란 설교와 가르침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목양의 기능과 성도를 가족으로 돌보는 사역 그리고 예식 집전 등 교회 전반적인 활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담임목사는 목회 활동에 전념한다.

제11조(담임목사의 임기)

- ① 본 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하며 임기는 7년으로 한다.
- ② 임기 후 차기 청빙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③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결의 후 임기제 동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한다.

제12조(담임목사 청빙)

- ①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임기 만료 1년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한다.
- ② 청빙 절차의 제1은 현재 담임목사를 다음 임기 담임목사의 단독 후보로 공동의회에 제출하며, 출석 공동의회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임기의 담임목사를 정한다.
- ③ 위2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당회의 의결을 거쳐 청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위원회, 공동의회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④ 담임목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당회의 의결을 거쳐 청빙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담임목사 해임 및 사임)

- ① 담임목사는 본인이 당회에 사직 의사를 표시할 경우 당회 결의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또는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② 해임 발의는 당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발의가 있으면 공동의회에 해임안을 상정하며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노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의 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의해 권고 사임을 노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장로)

- ①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치리하는 일을 한다.
- ② 장로는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이며 만40세 이상된 남, 녀로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과 능력이 있는 자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③ 장로선출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노회에서 허락한 정수에 기초해 간사회의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의 수가 노회에서 허락한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비뽑기로 최종정수를 결정한다. 최종정수로 추천된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간사회의의 추천 절차 및 추천 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25.2.2.>
- ④ 장로 정년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 1. 장로는 취임 후 만 7년간 시무장로로 헌신한다. 시무는 3년 시무, 1년 안식, 3년 시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만 64세 이상에 선출된 피택장로는 안식년 없이 정년까지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
 - 2. 7년 시무 기간이 지난 만 70세 이하의 시무장로는 3년 안식 후 당회 추천으로 간사회의에서 신임을 물어 연임할 수 있다. 신임은 간사회의에서 의결권 있는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5. 2. 2>
- ⑤ 시무 기간을 마친 장로는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은퇴장로로 헌신할 수 있으며, 당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⑥ 장로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된다.

제15조(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 ② 안수집사는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등록한지 5년 이상(이명 등록 안수집사는 3년 이상)이며 만40세 이상된 남자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선출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③ 안수집사 정년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 ④ 안수집사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되며, 당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사직 요청에 따라 간사회에서 의결권 있는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면한다.

제16조(권사)

- ①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봉사한다.
- ② 권사는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등록한지 5년 이상(이명 등록 권사는 3년 이상)이며 만5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로 한다. 선출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③ 권사 정년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 ④ 권사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되며, 당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사직 요청에 따라 간사회에서 의결권 있는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면한다.
- ⑤ 만 70세 이상, 교회 등록한 지 3년 이상 된 자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어 해당 구역장, 교구장, 교역자가 추천한 자 중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당회 결의에 따라 명예권사로 호칭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 ① 감사는 교회 재정과 사무일체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 ② 감사는 당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는 필요하면 세례교인 중에서 업무보조를 위한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은 감사의 추천에 의해 당회에서 승인한다. 재정 부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8조(부교역자)

-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좌하는 부목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말하며 전임과 비전임으로 둘 수 있다.
- ②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 의결로 청빙한다.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 의결로 1년씩 재임용 할 수 있다.
단, 교육전담 책임목사를 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당회의 요청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특정 부교역자의 해임을 담임목사에게 요청하면 담임목사는 해당 부교역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④ 부교역자의 근무조건은 청빙할 때에 정한다.

제19조(행정장로, 사무장과 사무직원)

- ① 교회의 관리 및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결정을 총괄하는 행정장로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에서 결정 한다..
- ②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은 당회 의결로 채용되며 행정위원회에 소속한다.
- ④ 필요하면 당회 결의로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와 부)

- 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를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 및 부의 신설과 폐지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회의

제21조(공동의회) 본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에 만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 ②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 ③ 소집 및 회기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신년 예산을 확정하고 회계연도(12월31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의 의결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3. 임시회는 의장, 당회,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회의 소집을 할 때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후보,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공동의회는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정관 및 기타 운영세칙이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④ 공동의회의 할 일은 아래와 같다.
1. 담임목사의 신임과 해임에 대한 건의여부
 2. 각종 임직자의 신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 보고의 승인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6. 교단, 총회, 노회의 탈퇴와 변경
 7. 기타 안건
- 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1. 위 4항 제1호 담임목사의 신임과 해임 여부가 안건인 경우
 2. 당회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공동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 ⑥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을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에 의한 교인명부의 확정 및 열람과 폐쇄를 한다. 위 4항 제4호 및 제6호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동의회 의장은 투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제직회)

- ①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은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발언권 회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직회 의장은 공동의회 의장이 겸임하며, 서기는 안수집사 회장이 겸임한다.
- ②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회의 소집을 할 때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후보,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직회는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정관 및 기타 운영세칙이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④ 제직회 표결자격 중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언권회원’으로서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표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제직회의 의결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직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내에서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⑤ 제직회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보고 청취
 2.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3. 교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23조(당회) 본 교회의 당회(이하 ‘당회’라 한다)는 본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행정장로가 겸임하며 당회와 본 교회를 대표한다. 당회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①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회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는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3. 당회는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처분 등을 담당한다.
4.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 명칭 및 주사무소 변경 등을 결정한다

② (당회의 소집)

1.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임시당회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회의 결의)

당회의 결의는 헌법과 본 정관에 따로 명기된 사항이 아닌것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가결한다.

④ (당회의 할 일)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맡아서 보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당회의 결의로 신임 안수집사, 권사를 추천한다.
5.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6.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정한다.
7. 권징하는 일을 한다.
8.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9.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를 한다.
10.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1. 교회 예산과 결산 심의를 한다.
12.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13. 담임목사의 청빙을 의결 한다.
14. 교회 각부의 인사권을 결정 한다.
15. 교역자의 보수 총액 결정 한다.
16.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17. 당회는 결의사항을 기록하여 당회록으로 보관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4조(간사회)

- ① 간사회는 향존직(은퇴자포함)인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교구장, 구역장, 각부서의 간사, 위원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간사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개정 2025. 2. 2>
- ② 신임 장로 선출시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도 간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표결,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 ③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회의 소집을 할 때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후보, 예배 광고, 홈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간사회는 그 작성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정관 및 기타 운영세칙이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⑤ 간사회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임(新任) 장로의 선거 투표
 2.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3.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25조(자치회)

- ①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전도회 및 선교회 등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제26조(정족수) 위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공동의회 회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결석 회원을 제외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운영한다.

- ① 전도,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을 위한 예산과 지출은 교회 목적에 맞도록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 ② 재정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사용하며,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 사용내역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결산은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교회의 재정은 매월 공개되어야 하며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단, 교인들의 현금명부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특정 선교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 ④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예산과 결산에 관한 공동의회는 제21조 3항 2호에 따른다.

제29조(현금관리) 교회 내로 유입되는 모든 현금은 교회명의로 계좌로 입금한다. 필요한 각종 사업별 지출은 단일계좌에서 사업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업별 계좌에서 집행한다.

제30조(교회재산)

- ① 교회의 재산인 부동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등 제반 사항은 행정위원회 동의와 당회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관리 사항 또는 제직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
- ② 모든 재산의 등기는 분당소망교회 명의로 한다.
- ③ 행정위원회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 때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도 응해야 한다.
- ④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 ⑤ 부동산의 매입과 처분 또는 은행에 차입이나 담보 제공은 당회의 결의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5천만원 이상의 동산의 매입과 처분은 당회 결의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선교원을 둘 수 있다.
- ⑧ 교회가 교인의 복지를 위해 수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1조(예산편성) 당회로부터 신년도 종합 운영계획서를 인수한 제직회 예결산 위원회는 신년도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여 12월 첫째 주일에 당회의 심의받은 후, 12월 둘째 주에 제직회를 거쳐 12월 셋째 주일에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 신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제32조(재정위원회)

- ① 전반적인 재정정책 및 예산과 결산을 관장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 ② 재정위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세례교인 중에서 전문식견을 가진 자를 위원장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③ 재정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재정부운영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거래
 - 2. 주별 수입 및 지출, 재정잔고 현황의 결산
 - 3. 전임사역자의 보수 지급 및 퇴직사례금 관리
 - 4. 기타 지출에 관한 업무

제33조(전임, 비전임 사역자 등의 보수) 부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 비전임 사역자 등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①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청빙할 때 정한다.
- ②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세부 규정에 따른다.
- ③ 급여 성격을 제외한 비용들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정산하며 그 지출된 비용은 지출증빙을 첨부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 ①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회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②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당회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35조(재정 집행)

- ① 모든 재정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되, 예산 범위 이외의 지출은 당회 승인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 ② 재정 집행은 행정장로 동의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집행한다.

제 6 장 권징

제36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7조(권징의 과정) 교회 내외에서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는, 당회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례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회개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가 정한 치리회에서 권징안을 당회에 넘기고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당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 내외의 권징 및 고소절차는 무효로 한다.

제38조(책벌의 종류)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이다. 출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부칙

제39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정관은 이를 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40조(시행세칙, 교회 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회 의결에 의해 따로 시행세칙 또는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개정)

- ① 이 정관은 당회 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투표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당시 사역자의 임기(12조 1항)는 개정 후 새 정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42조(헌법)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른다.

(승인연혁)

2022년 09월 04일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2025년 02월 02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승인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소망교회

대표 당회장 김광호

*2022 분당소망교회, ALL RIGHTS RESERVED.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소망교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37'